

#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관악4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 정 희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최근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과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개정된 법과 규칙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변경된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제5조제1항 중 “법 제9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9조의3

제1항”으로 하고, “운영하도록”을 “관리·운영하도록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
또한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다중이용시설부분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, 영화상영관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